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권한〉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5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개정안의 내용 .....          | 3  |
| 2. 검토의견 .....             | 4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 10 |



# I. 개요

##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3. 28.
- (3) 회 부 일 : 2025. 3. 3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을 확인 (열람·사본발급 등)할 수 있게 하는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0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 19. (생략)<br><u>&lt;신설&gt;</u>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1. ~ 19. (현행과 같음)<br>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공포한 날                                                                                                                                                                                                                              |                                                                                                                                                                                                                                                                                        |

##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sup>1)</sup>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각 호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 >

|          |                                                                                                                                                                                                                                                                                                                                                                                                     |
|----------|-----------------------------------------------------------------------------------------------------------------------------------------------------------------------------------------------------------------------------------------------------------------------------------------------------------------------------------------------------------------------------------------------------|
| 환자<br>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가족 등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br/>(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증명서만 첨부)</li> <li>·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li> </ul>                                                                                                                                                                                                                       |
| 급여<br>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된 경우</li> <li>·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li> <li>·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li> <li>·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 관련 요청의 경우</li> <li>·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관련 요청의 경우</li> <li>·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li> </ul> |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법원<br>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106조), 검사의 압수·수색·검증(215조) 등</li> <li>·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압수(146조), 군검사의 압수·수색·검증(254조) 등</li> <li>·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li> </ul>                                                                                      |
| 보험<br>및<br>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의 경우</li>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기록을 보내는 경우</li> <li>·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조사를 하는 경우</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
| 심사<br>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에 관련된 경우</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와 관련된 경우</li> <li>·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등에 관한 경우</li> </ul>                                          |

□ 이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체계는 2009. 1. 30.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종전에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도 열람 등이 가능했던 규정을 현행과 같이 열거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의료법의 규율 하에서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한 것임.<sup>2)</sup>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입법·사법·행정 3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sup>3)</sup>

2) 법제처는 “다른 법령에 진료기록 등의 요청 근거가 있더라도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2015.7.28. 법제처 법령해석 15-0373 참조).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구금·보호시설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sup>4)</sup>이 포함되어 있으며,<sup>5)</sup> 최근 10년간 1만 7천여건의 조사가 이루어짐.<sup>6)</sup>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 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각 목 생략)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 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6) 서미화의원실 보도자료, 2025.3.31.

- 인권위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징벌 목적의 격리 행위’,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 강박 및 기저귀 착용 등의 행위가 치료 목적의 정당한 사유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sup>7)</sup>

□ 현재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피진정기관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및 제36조<sup>8)</sup>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국가인권위원회, 2022) 참고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처해짐.<sup>9)</sup> 이때 당사자의 진료기록도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료로 보아 동 조항에 근거한 요청을 통해 제출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 체계상 제21조제3항 각 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신의료기관이 동조 제2항<sup>10)</sup>에 근거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 법제처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sup>11)</sup>

□ 이에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sup>12)</sup>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10)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법제처는 “의료인들이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열거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다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관한 조사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함(법제처-15-0373,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5.7.28.)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서 “당사자”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을 약칭한 것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sup>13)</sup>

□ 다만,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당사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당사자에는 진정한 및 피해자 외에도 피진정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사업무와 무관한 피진정인의 진료기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1) 보건복지부 (수정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인권위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필요 최소범위 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및 제3자인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은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바 열람대상에서 ‘당사자’를 ‘피해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행정적 편의’라는 공익보다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가 현저하므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취지에 어긋남.
- 환자의 진료기록 제공과 같은 병원의 행정업무는 의료기관 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 시, 특히 환자 본인에게 침익적인 상황에서 진료기록이 외부에 제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이유로 환자 측에서 의료기관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됨.

### (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
|--------------|
| 문 의 처        |
| 02)6788-5494 |